### 계명가족회사제 내규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계명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와 계명가족회사(이하 "가족회사"라 한다)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산학 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이 가족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가족회사 협약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.
  - ② 산업체와 가족회사협약은 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과 대학, 사업단(센터), 연구소 등도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3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가족회사는 산학협력단과 산학공동연구, 기술이전, 현장실습, 교육멘토활동, 캡스톤디자인, 기술지도 및 자문, 대학의 시설 및 장비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위하여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.
  - 2. 산업체는 기업, 연구소, 공공기관, 협력이 필요한 기타 기관, 단체 등을 말한다.
  - 3. 등급제는 대학과 가족회사간의 교류활동실적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기업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말한다.
  - 4. 후보군은 가족회사 협약신청서를 제출한 산업체를 말한다.
- 제4조(가족회사 혜택) 가족회사는 제12조의 규정된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받으며, 등급별 혜택은 따로 정한다.
  - 1. 대학 주관 및 각종 산학협력 정보 제공
  - 2. 교수진의 경영자문 및 기술지도 제공
  - 3.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우선 참여
  - 4. 대학 보유 시설 및 공용장비 지원
  - 5. 산학협력협의회를 통한 동종 및 이업종간 교류기회 제공
  - 6. 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
  - 7. 계명가족회사 초청 행사 참여
  - 8. 학기제 및 계절제, 장·단기 현장실습제 연수 인력지원
  - 9. 계명아트센터 공연료 할인
  - 10. 동산의료원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우대
  - 11. 동산도서관 이용 서비스 제공
  - 12. 대학 내 개설되는 외국어 강좌 수강료 감면
  - 13. 통번역 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
  - 14. 기타 기업맞춤 서비스 제공
- **제5조(업무)** 가족회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 기업지원실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가족회사 협약체결
  - 2.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

- 3.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수집 및 활동
- 4. 산업체와 공동기술 개발
- 5.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
- 6. 인력·시설·설비의 공동활용
- 7. 교류활동 실적에 따른 가족회사 등급제 운영 및 유료화 실시
- 8. 가족회사 후보군 관리
- 9. 기타 가족회사간 산학협력 관련 제반 업무
- 제6조(가입신청 및 승인) ① 우리 대학교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에게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신규 가입신청 산업체는 후보군으로 관리를 하며, 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와 일정 기간 동안의 산학교류 실적을 고려하여 가족회사 협약을 승인한다.
  - ③ 후보군 등록 및 가족회사 협약 승인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7조(실무사항)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산업체와 혐의한다.
- 제8조(제반경비)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산학협력단과 산업체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9조(협약당사자) 가족회사의 협약당사자는 대표이사가 되고 대학의 협약당사자는 총장이 되다
- **제10조(협약서)** ①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, 협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하여 수정할 수 있다.
  - ② 협약내용은 산학공동연구, 기술이전, 현장실습, 교육멘토활동, 캡스톤디자인, 기술지도 및 자문, 대학의 시설 및 장비활용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,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- ③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어느 한 기관에서 문서상으로 협정파기 의사를 6개월 전에 통보받지 않을 경우 협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협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제11조(산학협력협의회)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체와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가족회사가 중심이 되고 관련 학과(전공), 교내외 연구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학협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산학협력협의회에 회장, 부회장, 주관교수 각 1인을 둘 수 있다.
  - ③ 산학협력협의회 회장은 가족회사 대표로 하며, 부회장과 주관교수는 산학협력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12조(가족회사 등급제) 대학과 가족회사간의 교류활동실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족회사 등급을 부여한다. 다만,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가족회사 등급을 따로 부여할 수 있다.
  - 1. 최우수 가족회사: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참여(산학공동연구, 기술이전), 기업연계 학부교육 참여, 계약학과 참여, 우리 대학교 졸업생의 채용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.
  - 2. 우수 가족회사: 기술이전, 현장실습, 교육멘토활동, 재직자 교육, 디마시클리닉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.
  - 3. 활동 가족회사: 협의체(포럼, 협의회) 활동, 산학협력 행사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지 제1호 서식] 계명가족회사 가입신청서

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	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

「계명가족회사」가입신청서										
기 업 명(상호)				대표	도 자					
사업자등록번호			설립	일자						
주 소	(우:	)								
E-mail				전	화					
업 종			홈페	이지						
주요품목			전년도	매출액	백만원					
유형	□ 대기업 □ 중견기업 □ 중소기업 □ 벤처기업 □ 1인창조기업 □ 연구소 기업 □ 기타									
상시종업원수	명	연구소 🗆	유 □무	연구전	담부서	□ 유	□ 무			
ت اد	성 명			부서/	/직함					
실 무 담당자	전 화			휴대	전화					
日 O × 1	E-mail			팩	스					
※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실무담당자: (인)										
	□ 현장실	습								
우리 대학교와의	□ 학생취업 ※ <i>필히 기재 요망(상세히)</i>									
교류(예정)사항	□ 기술이전									
	□ 기타									
가입경로		□ 산학협력단       □ 교수추천 (       ) □ 광고(인터넷, 신문 등)         □ 지인소개       □ 기       타 (       )								
계명대학교 「계명가족회사」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불임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회사 로고 파일(E-mail 별도 송부) 20 년 월 일 신청자: 인										
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										

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기업지원실 T.(053)580-6743 F.(053)580-6735 E-mail: ranwoo@gw.kmu.ac.kr

[별지 제2호 서식] 계명가족회사협약서

# (협약기업 (협약기업명) - 계명대학교 로고) 계명가족회사 협약서



(협약기업명)와 계명대학교 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)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- 1. 계명대학교는 가족회사 임직원의 위탁 및 재교육, 기술·경영지 도, 연구장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애로기술해결과 신기술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한다.
- 2. 가족회사는 기술과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며, 특히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과 연계되도록 최대한 협력한다.
- 3.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, 그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차원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4.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,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 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.
- 5. 어느 한 기관에서 문서상으로 협정 파기 의사를 6개월 전에 통보 받지 않을 경우 이 협약서는 유효하며,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 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(협약기업명) (협약기업 대표자) 계명대학교총장신일희



## 계명대학교 - (협약기업명) (협약기업 계명가족회사 협약서 <sup>로고)</sup>

계명대학교와 (협약기업명) 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)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- 1. 계명대학교는 가족회사 임직원의 위탁 및 재교육, 기술·경영지 도, 연구장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애로기술해결과 신기 술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한다.
- 2. 가족회사는 기술과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며, 특히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과 연계되도록 최대한 협력한다.
- 3.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, 그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차원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4.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,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 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.
- 5. 어느 한 기관에서 문서상으로 협정 파기 의사를 6개월 전에 통보 받지 않을 경우 이 협약서는 유효하며,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 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계명대학교총장신일희

(협약기업명)

(협약기업 대표자)